

청년재단 미니연구 '청년이 만들어 가는 Young한 연구' 공모(안)

2022.05.04.(수)

I 사업개요

- (사 업 명) 청년재단 미니연구공모 '청년이 만들어 가는 Young한 연구'
- (목 적) 청년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수행 중인 청년당사자를 대상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발굴·지원
 - ※ 해당사업은 청년당사자 및 청년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, 지속가능한 청년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청년재단의 청년지원사업입니다.
- (참여대상) 최근 2년('20-'현재) 이내 청년대상 연구 및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개인 또는 팀(2인 이상)
 - 청년당사자, 청년활동가, 연구자, 청년단체, 공익활동가 등
 - 최근 2년 이내 청년관련 연구·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참여자
 - * 참여기준 :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(청년기본법 기준)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
 - ** 종교, 정치, 사회통념과 상충되는 특정목적의 개인 및 단체 참여제한
- (선정규모) 약 10개 연구과제(삶의 질 5건, 지역청년정책 5건)
 - ※ 예산범위 내에서 과제 수는 변동될 수 있음
- (지원규모) 연구 당 300만원 한도(심사를 통한 차등 지원)
- (기 간) 계약체결일로부터~'22년 10월 까지(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)
- (결과활용)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기업, 기관에 더 나은 청년의 삶 지원과 지역청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로 활용될 수 있음
- (주요일정)

일정	내용	비고
5-6월	Young한 연구 공고 및 접수	재단 홈페이지 등 공고
6월	제안서심사 및 선정과제 발표	연구제안서 심사 비대면 인터뷰
7-10월	계약체결 및 Young한 연구 수행(10개 과제)	계약체결 시 활동비 선금지급 연구활동 마지막 달 잔금지급 (최소 3개월 이상 연구활동必)
9-10월	연구보고서 제출 및 결과보고회	제3회 청년의 날 연계 (9월 셋째주)

II 공모주제

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

* 일자리, 주거, 교육, 문화·복지, 참여·권리, 금융·자산, 사회문제, 미래세대, 기후위기, 젠더·세대갈등 등 청년 삶 전반의 영역

② 우리동네(내가 생활하는 지역) 청년정책 연구활동

*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연구·조사를 통해 보다 나은 지역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및 제언 도출

《Young한 연구를 통해 지향하는 점》

- 1) 청년의 삶 개선 및 지역청년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
- 2) 청년 스스로 현재의 삶과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탐색 기회 제공
- 3) 청년연구자 및 청년활동가의 공익활동 조력으로 지속가능한 청년생태계 구축
- 4) 지역청년 이탈방지 및 지역정주를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 도출
- 5) 지역과 청년을 잇는 정책제안으로 지역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축

III 지원내용

○ 연구활동비 지원

- 지원금액 : 연구 당 300만원 한도(심사를 통한 차등 지원)

- 지급방법 : 재단 표준계약에 의거하여 지급

연번	항목	지급률	비고
1	계약체결 후	70%	오리엔테이션 및 착수보고회 참석 후 지급
2	연구활동 마지막 달	30%	최소 3개월 이상 연구활동必

* 1) 사업관련행사 및 회의 불참, 2) 제출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, 3) 기타 사업목적 이외 프로젝트 수행 시, 연구활동비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

** 연구활동비는 사업소득(3.3%) 원천징수하여, 연구책임자 통장(계좌)으로 입금처리

○ 재단-참여연구자 네트워킹

- 최신 청년정책 및 청년기사, 청년지원프로그램 등 정보제공

- 재단 프로그램 및 행사 초청, Young한 교류회(멤버십) 운영

○ 멘토링 및 연구수행 지원

- 연구활동팀 요청 또는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멘토링 및 연구수행 지원 운영
-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한 자문 및 지도 지원
- 재단과 연구활동팀 간 협의하여 멘토 매칭 및 자문·지도 실시

* 멘토링 및 연구수행 비용은 재단에서 지원

IV 선정방법

- (선정절차) 1차 서류심사 및 2차 비대면 인터뷰 후 최종선정
- (심사위원) 재단 사무국 및 청년정책·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
- (심사기준) 서류심사(지원요건 적합성 및 동기), 면접심사(연구활동내용)

V 주요일정

- (사업공고 및 모집) '22. 5월 9(월) ~ 6월 6일(월)
- (서류심사 및 발표) '22. 6월 3주차
- (면접심사 및 발표) '22. 6월 4주차(비대면 인터뷰 진행)
- (연구계획서 제출 및 오리엔테이션) '22. 6월 5주차
- (계약체결 및 연구활동비 지급) '22. 7월 1~2주차
- (연구활동 실행) '22. 7월 ~ 10월 까지(최소 3개월 이상)
- (멘토링 및 수행지원, 중간보고회) 필요 시 프로젝트 실행 기간 내 운영
- (연구보고서 제출 및 결과보고회) '22. 9~10월 중(제3회 청년의 날 연계)

※ 세부 일자는 추후 공지예정이며, 상기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VI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, 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제외, 선정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재단 사업에 대한 향후 1년간의 참여제한이 있음
- 제출된 제안서는 재단의 승인없이 수정, 보완될 수 없고,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
- 재단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
-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재단의 소유이며, 재단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
- 제안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
- 상기 공고 내용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전 공지 예정

별첨 「청년이 만들어 가는 Young한 연구」 연구활동비 산정기준

I. 기본원칙

- 본 사업비 산정기준은 연구활동지원 및 재단의 “예산편성 및 집행지침”을 적용하였으며, 연구활동 특성 상 사업비 계상기준 이외 항목의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편성할 수 있음. 단, 계상기준은 재단의 “예산편성 및 집행지침”을 준용함

II. 사업비 계상기준

항목	내용			
연구활동비	구분		활동비 기준	
	연구수행비(인건비)		1인 월 1,000,000원 이하	
	* 연구활동비는 '22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중 '보조원(2,558,092원)'의 임금에 약 40%로 산출하였음.			
홍보비	○ 현수막, 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○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 필수			
인쇄 및 유인비	○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양식,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○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 필수			
사무용품구입비	○ 필기용구,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○ 총 경비의 5% 이내			
강사비	구분	S급	A급	B급
	강사료	20만원 (시간당)한도	15만원 (시간당)한도	10만원 (시간당)한도
	원고료	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고료 지급기준 준용		
	자격	경력 및 활동경험 15년 이상 차관급이상 공무원 연구기관 임원급(기업체사장급) 이상 부총장급(대학) 이상	경력 및 활동경험 10년 이상 4급이상 공무원 책임연구원급(연구위원)이상 정교수급 이상	경력 및 활동경험 10년 미만 5급 이상 공무원 선임연구원(부연구위원)이상 부교수급 이상
	각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로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자			
	* 강사료의 지급 시 1일 3시간 이하는 100%를 지급하고, 3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%감액하여 지급한다. 단, 1일 한도는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			

항목	내용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 활용비	구 분		지급금액																		
	자문료	- 기본 : 100,000원(시간) - 초과 : 50,000원 *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																			
	통·번역료	한국외국어대학교 통·번역센터 기준에 준용한다.																			
회의비	○ 사업추진 시 필요한 회의 및 교육훈련 등 업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식비 ○ 1인당 1식 최대 한도를 15,000원으로 하며, 회의 및 행사 진행에 필요한 다과비는 한도 범위 내에서 5,000원까지 사용 가능																				
국내여비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text-align:center;"> <thead> <tr> <th>철도운임</th> <th>선박운임</th> <th>항공운임</th> <th>자동차 운임</th> <th>일 비 (1일당)</th> <th>숙박비 (1박당)</th> <th>식 비 (1일당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실비 (일반실)</td> <td>실비 (2등급)</td> <td>실비 (Economy)</td> <td>실비</td> <td>20,000원</td> <td>실비 (상한: 60,000원)</td> <td>2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운임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박당)	식 비 (1일당)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 (Economy)	실비	20,000원	실비 (상한: 60,000원)	20,000	
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운임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박당)	식 비 (1일당)														
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 (Economy)	실비	20,000원	실비 (상한: 60,000원)	20,000														
* 상기 항공운임에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. * 자동차 운임은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*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에 해당하며, 같은 시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)·군 및 섬(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)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.								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center;"><자동차 운임 실비지급 기준></p> ① 연료비 지급기준 : 여행거리(km) × 유가 ÷ 연비 ㉠ 여행거리(km) :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, 다만,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㉡ 유가 :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*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(www.opinet.co.kr)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(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, 경유차량은 자동차용 경유,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)를 적용 ㉢ 연비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text-align:center; margin-top:1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휘발유차량</th> <th>경유차량</th> <th>LPG차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단가(km/ℓ)</td> <td>10.06</td> <td>10.16</td> <td>7.87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구분	휘발유차량	경유차량	LPG차량	단가(km/ℓ)	10.06	10.16	7.87								
구분	휘발유차량	경유차량	LPG차량																		
단가(km/ℓ)	10.06	10.16	7.87																		
② 통행료 지급기준 : 통행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비고 :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수행인력이 정한 기준을 운영하되, 한국도로공사(www.roadplus.com) 또는 포털지도(네이버, 다음 등)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 ③ 전기차 : 환경부 전기차 충전요금 완속 기준 참조																					
대관료	○ 연구활동 수행 시 제반되는 행사, 모임 등에 대한 장소 임차료 ○ 행사 필요 시 재단 공유공간(강의장, 세미나실 등) 활용 권장(사전일정조율)																				
경비사용제한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, 단체 및 법인 운영경비 편성 불가 * ex) 자본적 경비(시설비, 자산취득비, 수선비, 통신시설 설치비 등), 사업과 무관																				

항목	내용
	<p>한 운영경비(전기료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구입, 잡비, 인건비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재위탁 및 기부금 편성 불가 □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흥업종('한국표준산업분류'상 일반유흥주점*과 무도유흥주점**) * 일반유흥주점 :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(룸싸롱, 단란주점, 가라오케, 가요주점, 요정, 비어홀, 맥주홀, 카페, 바 등) ** 무도유흥주점 :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(클럽, 극장식주점, 나이트클럽, 카페, 스탠드바, 유흥주점 등) ○ 위생업종(이.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 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) ○ 레저업종(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) ○ 사행업종(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) ○ 기타업종(성인용품점, 총포류판매) ○ 회의식비 사용내역은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.